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Easy Understandable ISD Cases



법무부

외자유치와 해외투자의 증가에 따라 ISD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 분쟁 사례 증가는 ISD(Investor - State Dispute)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졌고, 이후 ISD 사건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12월 31일 기준 94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외자유치액이 269억 달러에 이르고, 97개의 투자보장협정(BIT)과 자유무역협정(FTA)에 ISD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2012년 론스타 펀드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ISD를 제기함에 따라 ISD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2018년 해외투자액이 497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ISD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 본서의 통계는 UNCTAD와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제투자분쟁, 알고 나면 대처가 가능합니다.

본 책자는 다소 생소한 ISD의 개념부터 실무절차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사례까지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으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해외진출 기업이 외자유치와 해외투자과정에서 본 책자를 적절히 활용하면 국제투자분쟁 예방과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ISD의 개념과 현황

01

Q: ISD는 어떤 제도인가요?

A: A국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인 B국 사이에 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A국이 직접 B국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국제기구나 중재기관에 제소하거나 A국 투자자가 B국의 국내 법원에 B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ISD는 투자유치국인 B국의 BIT 또는 FTA상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A국 투자자가 직접 B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통해 배상받는 제도입니다.

02

Q: 투자자에 투자자 개인만 포함되나요?

A: 투자협정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투자자에는 투자유치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공기업, 개인(natural person) 또는 기업(enterprise)이 포함됩니다.

협정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자기 명의로 직접 ISD 제소가 가능하고, 자신이 직·간접으로 소유 및 지배하는 기업을 대신하여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03

Q: ISD 청구인인 기업의 경우 민간기업만 포함되나요?

A: 투자협정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ISD 청구인인 기업은 영리목적, 민간소유 여부 등을 불문하고, 주식회사, 신탁회사, 합명회사, 1인기업, 합작회사, 조합, 공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합니다.

04

Q: 투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도
ISD제소가 가능한가요?

A: 투자협정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ISD 제소가
가능한 투자자에는 기업의 경영통제주주, 다수지분권자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도 포함됩니다.

Q: 중앙정부의 조치만이 ISD의 대상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투자협정문은 국가의 조치가 ISD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국제법 원칙에 따라 국가기관의 조치는 국가의 조치로 간주되고, 이 때 국가기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포함됩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공기업·공공기관에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역시 국가기관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인 또는 비정부단체라도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면 그러한 사람 또는 단체의 행위가 국가의 조치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국가의 지시를 받아 또는 그 지휘 감독 하에서 행동하였다면 사인의 행위도 국가의 조치로서 ISD의 대상이 됩니다.

06

Q: 투자자는 어떠한 투자를 한 경우 ISD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투자협정문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투자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의 특징으로 제시되는 것들은 ①금전 기타 출자, ②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 ③위험부담 감수, ④투자 유치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가 있으나, 모든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FTA에서 투자의 정의에는 지분참여, 채권, 선물, 옵션, 완성품인도, 건설계약, 지적재산권, 면허, 인가, 허가, 그 밖의 유·무형의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07

Q: 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떤 법원이나
기관에 제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투자분쟁 발생시 투자자는 투자유치국
국내구제절차와 국제중재절차(ISD)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개의 절차가 병행 청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협정에서 국내구제절차와 ISD 중
하나의 절차만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택일조항). 이 경우 만약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국내구제절차를 선택한 경우에는 ISD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08

Q : 국제중재기관에는 어떤 기관이 있나요?

A : ①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②HKIAC(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홍콩국제중재센터) ③SIAC(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④KCAB(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대한상사중재원) 등이 있습니다.

09

Q: ISD의 세계적인 현황 또는 추세는 어떠한가요?

A: 1987년 ICSID에 AAPL v. Sri Lanka 사건이 처음 접수된 이래 1990년대 후반부터 분쟁사례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12월 31일 기준 ISD는 총 942건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한 해에만 71건의 새로운 ISD 사건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다수의 투자분쟁과 NAFTA 회원국(미국, 캐나다, 멕시코)들간의 투자분쟁이 1990년대 후반 ISD 사건 급증의 주된 원인입니다.

10

Q: ISD 피청구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A: 현재까지 117개국이 ISD 청구를 당하였고, 우리나라도 2012년에 발생한 론스타 사건을 시작으로 ISD 피청구국에 포함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피청구국이 아르헨티나인 사건이 6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스페인이 49건, 베네수엘라가 47건, 체코가 3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16건, 28건의 ISD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11

Q: ISD 사건에서 평균적으로 인용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투자자가 승소한 ISD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청구금액은 평균 13억 달러 수준이고 그 중 인용금액은
평균 5억 달러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ISD 사건에서 인용된
가장 높은 손해배상 액수는 2014년 Yukos v. Russia
사건에서의 500억 달러(한화로 약 56조 7천억원)이지만,
본 판정은 네덜란드의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파기되었고,
현재 본 파기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을 제외하면, ISD 사건에서의 평균 청구 금액은 4.5억
달러, 평균 인용금액은 1.2억 달러 정도입니다.

12

Q: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의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ISD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2018년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된 88건의 BIT중 83건, 15건의 FTA 중 14건에 ISD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 상대국으로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 미국, 인도,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이고, 이 국가들의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ISD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실제로 한국을 상대로 ISD를 청구한 투자자들의 국적은 미국(3건), 스위스 · 이란 · 네덜란드 · 벨기에(각 1건씩) 등입니다(2019년 6월 기준).

13

Q: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거나 우리 투자자가 외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례가 있나요?

A: 2019년 6월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경우는 총 7건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사례는 6건이 알려져 있습니다 (단, 정식 중재 제기가 있는 경우 기준이며, 단순히 중재의향만을 통보한 경우는 미포함).

•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경우

- ① 론스타 (2012년, 한-벨기에 · 룩셈부르크 BIT)
- ② 하노칼 (2015년, 한-네덜란드 BIT)
- ③ 다야니 (2015년, 한-이란 BIT)
- ④ 엘리엇 (2018년, 한-미 FTA)

A:

⑤ 서진혜 (2018년, 한-미 FTA)

⑥ 메이슨 (2018년, 한-미 FTA)

⑦ 윈들러 (2018년, 한-EFTA 투자협정)

• 우리나라 투자자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경우

① 리 존 백 (2013년, 키르기스스탄)

② 안성주택 (2014년, 중국)

③ 삼성 엔지니어링 (2015년, 오만)

④ 삼성 엔지니어링 (2017년, 사우디)

⑤ 신동백 (2018년, 베트남)

⑥ 신한 엔지니어링 (2013년, 리비아)



어떤 조치들이
ISD의 대상이 되나요?

14

Q: ISD 절차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A: ISD 절차의 근거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으로, 양자간투자보장협정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으로 대표되는 투자보장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투자챕터에 분쟁해결절차 조항으로 규정됩니다.

그 외에도 국가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법률에 ISD 조항이 포함되거나,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에 ISD 조항이 포함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15

Q: 투자협정이란 무엇인가요?

A: 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이란 외국인 투자의 진흥과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투자협정인 1959년 독일-파키스탄 BIT 이래 2019년 현재 총 3,300건 이상의 투자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되고, 그 중 상당수가 ISD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6

Q: ISD 제소를 위해 투자자가 원용할 수 있는
투자유치국의 실제적 의무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투자협정문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유치국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는 ①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 외국인 투자자를 투자유치국 국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의무, ② 최혜국대우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외국인 투자자를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의무, ③ 최소기준
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 최소한의
공정 · 공평한 대우, 충분한 보호와 안전 등을 제공할 의무,
④ 요건에 합치한 직접/간접수용 및 그 보상, ⑤ 자유로운
송금보장, ⑥ 불합리한 이행의무 부과금지(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산원료 이용을 강제하는 경우 등) 등이
있습니다.

17

Q: 국제법상 수용 및 보상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 투자협정문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FTA와 BIT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 및 보상의 원칙이란, 국가는 수용시 ①공공목적을 위해, ②비차별적인 방식으로, ③적법절차에 따라야 하고, 또한 ④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신속·적절·효과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때 ‘신속한 보상’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고, ‘적절한 보상’은 보상이 수용일 당시의 가치에 따라 이루어지고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보상’은 보상이 자유사용가능통화(freely convertible currency)에 의하여 수용 당일의 환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

Q: 간접수용이란 무엇인가요?

A: 다수의 BIT와 FTA는 수용 및 보상의 원칙이 직접수용 뿐만 아니라 간접수용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수용이란,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자체를 물리적으로 박탈하지는 않으나, 그에 대한 경영, 사용, 통제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자산 가치를 중대하게 박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간접수용인지 여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①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투자자의 경제적 피해 정도 등), ②투자자가 투자에 부여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③정부조치의 성격(사회적 목적 또는 일반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국가의 권리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 등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19

Q: 과세정책,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입은 손해도 보상을
해야 하나요?

A: 투자협정문에 따라 상이하지만, 한미 FTA 및 최근의
FTA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남소와 국가의 과도한
배상책임을 배제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정부의 비차별조치나, 과세정책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손해는 수용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

Q: 내국민대우위반, 최혜국대우위반 등
투자협정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가 체결한 계약상의 불이행도
ISD의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만이 ISD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FTA나 BIT에서 일방 당사국과 투자자가 체결한
계약에 의한 의무 위반도 ISD 대상에 포함된다는
우산조항(Umbrella Clause)을 두고 있을 경우,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 위반에
대해서도 ISD 제기가 가능합니다.
즉, A국 투자자와 B국 정부 간 체결된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산조항을 원용하면 계약상
분쟁이 투자분쟁으로 전환되므로, A국 투자자는 B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

Q: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ISD 제기가 가능한가요?

A: 한중 BIT와 같이 우산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에서 적용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계약상의 불이행이 ISD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 FTA에서는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부여, 공공 서비스 공급, 사회 간접자본 수행에 관하여 외국인 투자자와 중앙정부가 체결한 투자계약에 근거한 분쟁만을 ISD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22

Q : 지방자치단체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처분취소나 외국인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의 불이행도 ISD의 대상이 되나요?

A : ISD의 대상이 되는 정부조치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경제자유구역청 등의 조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치가 아닌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투자계약에 근거한 분쟁일지라도 관련 FTA나
BIT에 우산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우산조항을 원용하여 ISD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3

Q: 모든 투자계약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모든 투자계약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우산조항을 원용하여 투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ISD를 제기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계약당사자의 의도, 계약상의 권리 침해의 중대성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4

Q: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를 위해 MOU를 체결했으나 정식계약 체결에 실패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A: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 자본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투자 사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계약의 협상, 입찰준비, 컨설팅, 인허가 절차 등에 지출한 비용을 ‘설립전 투자’라고 합니다. 설립전 투자의 보호 여부는 FTA나 BIT 당사국이 협정을 통해 설립전 투자도 투자로서 보호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한미 FTA와 한일 BIT 등 일부 투자 협정에서는 설립전 투자도 ISD 대상인 투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5

Q: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상에 관한 내용이나 계약의
골격을 정하는 문서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투자자가 양해각서가 계약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한 경우 또는 양해각서에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따라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26

Q : 양해각서(MOU)에 포함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양해각서에 비밀유지 의무,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을 포함한 협상의 독점성, 계약 협상 담보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가격조건, 대금지급조건, 분쟁해결조항, 위험부담 등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양해각서(MOU)에 포함될 경우 분쟁의 여지를 남기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ISD 예방 및 활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Q: 투자유치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설립전 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해각서 체결 단계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로 하여금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서라는 기대를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권한 밖의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사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8

Q: 양해각서(MOU) 체결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A: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 자체가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 의무 위반을 투자협정 위반으로 보는 우산조항(umbrella clause)에 근거한 ISD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양해각서에 “본건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의 현재 투자 관련 의도의 표현에 불과하고,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양 당사자를 구속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설립전 투자비용은 반드시 보상해야 하나요?

A: 일부 FTA와 BIT에서는 설립전 투자를 투자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유치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전 투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부수적 비용 등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보상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다면 ISD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의 예측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Q: 정책의 변경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에 따라 투자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투자유치국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 FTA나 BIT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것이 투자자나 투자유치국 모두에게 바람직합니다.

Q: ISD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나요?

A: ISD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MOU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법률검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정책변경이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KOTRA 옴부즈만 등 사전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기해결을 위해 협의 및 협상단계에서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관련 정부부처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2

Q: ISD 중재 제기 의사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A: 투자협정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중재청구를 제기하기 일정한 기간(예컨대 6개월) 전에 중재 제기 의사를 투자유치국에 서면(중재의향서)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중재의향서 제출과 본격적인 중재 제기 사이의 냉각기간 동안 사전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ISD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법무부에 분쟁발생 사실을 알리고, 협의나 협상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진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경우에도 법무부에 분쟁 사실을 알리고 조언을 받은 후 전문 법무법인 등을 통해 자문을 받고 투자유치국 관계자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4

Q: 협의나 협상에 의한 분쟁 해결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ISD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협의나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의나 협상은 중재신청을 하기 이전에 진행함이 일반적이나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또는 중재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실제 외국에서도 중재의향서 제출 이후에 투자유치국과 협의를 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35

Q: 중재의향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 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의향서를 투자유치국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중재의향서에는 중재신청인의 성명·주소, 위반이 된 투자협정·계약 등 관련 규정, 각 청구의 법적·사실적 근거, 구제조치와 손해액의 대략적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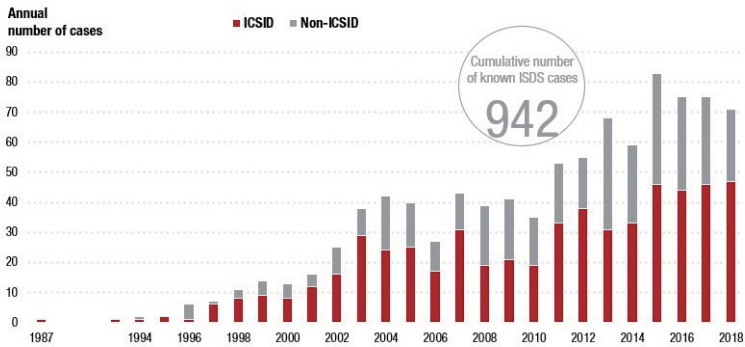
IV

통계 및 참고자료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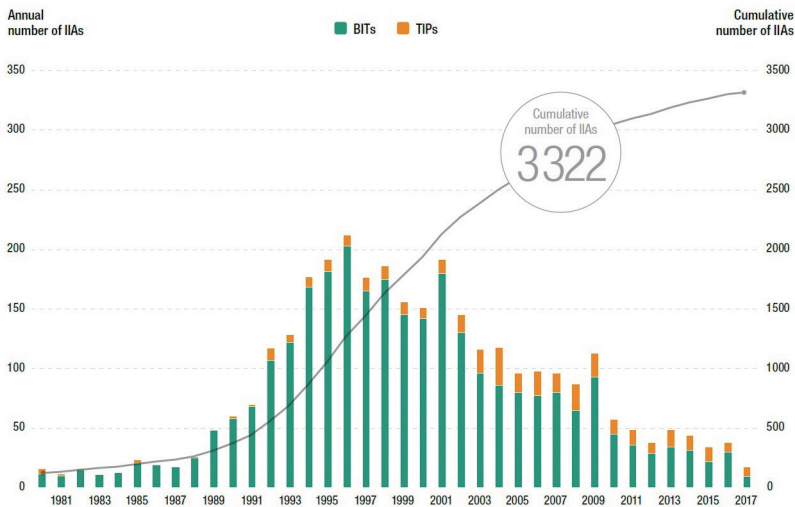
ISD 발생 및 투자협정 체결 현황

전세계적 ISD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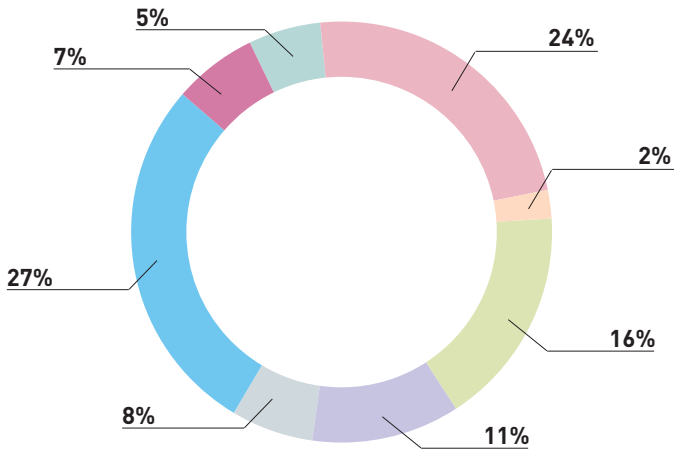
Source: UNCTAD, ISDS Navigator.

전세계적 투자협정 체결현황



02

지역별 ISD 발생 현황



동유럽 · 중앙아시아

서유럽

아프리카(사하라 사막 이남)

중동 ·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중미 · 카리브지역

북미

03

ISD 피제소국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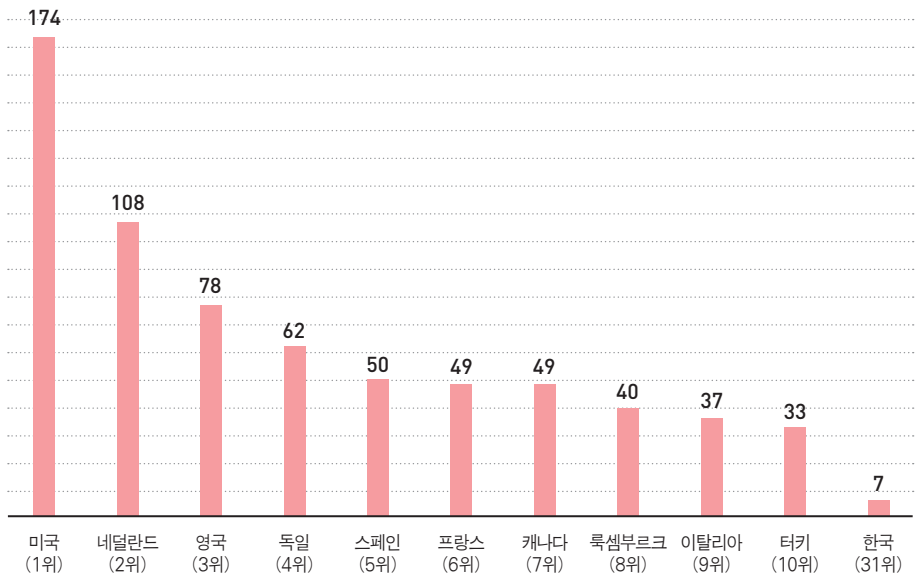
순위	국가	피제소건수	비고
1위	아르헨티나	60	
2위	스페인	49	
3위	베네수엘라	47	
4위	체코	38	
5위	이집트	33	
6위	멕시코	30	
7위	폴란드	30	
8위	캐나다	28	
9위	인도	24	
10위	러시아	24	
16위	미국	16	
41위	한국	7	

※ 2018년 말 기준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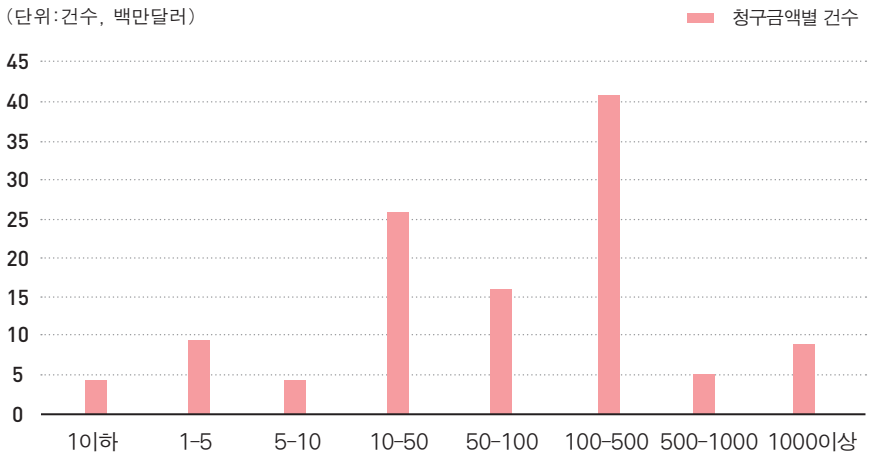
ISD 제소국가별 현황

※ 2018년 말 기준



청구금액별 투자분쟁

(단위:건수, 백만달러)



06

•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발효 (15건)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서명타결 (1건)	중미****
협상진행 (10건)	한중일, RCEP*****, 에콰도르 SECA, 이스라엘, MERCOSUR*****,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한-미 FTA 개정,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재개, 개시 여건조성 (3건)	멕시코, GCC*****, EAEU*****

- * EFTA 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 ASEAN 10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 EU 28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 중미 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 RCEP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ASEAN 10개국
- ***** MERCOSUR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 GCC :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 ***** EAEU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지역	국가 (체결순)
구주 지역 (32)	독일, 영국, 프랑스,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리투아니아, 터키, 스페인, 체코, 타지키스탄, 그리스, 핀란드, 포르투갈,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스웨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루마니아, 키르기즈스탄, 벨기에 · 룩셈부르크
아시아 지역 (17)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홍콩, 일본, 브루나이, 베트남, 중국, 한 · 중 · 일, 미얀마
아프리카 - 중동지역 (28)	튀니지, 세네갈, 이집트, 남아공, 나이지리아, 카타르, 모로코,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오만,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란, 모리타니아, 레바논, 쿠웨이트, 리비아, 모리셔스, 가봉,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카메룬
미주 지역 (17)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엘살바도르,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가이아나, 자메이카, 도미니카,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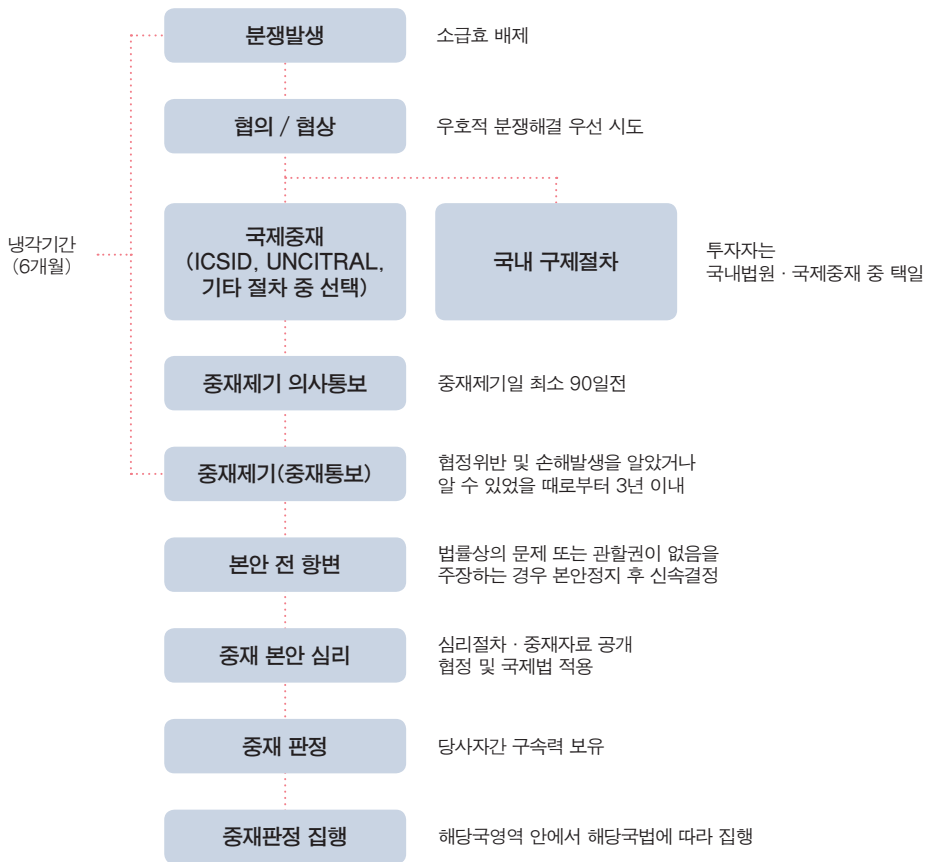
MOU 예시

- 00경제자유구역청과 00 그룹은 00사업의 지원과 투자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양해 하고 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 체결주체 :
- 투자 :
 1. 지역
 2. 규모
 3. 기간
 4. 내용
- 경제자유구역청의 의무 : 0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협상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진다.
- 기업의 의무 : 투자의 성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 설립전 비용문제 : 정식계약 체결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하지 아니한다.
- 계약체결시한 : 체결일로부터 00년간 유효하다. 당사자의 서면합의로 갱신이 가능하다.
- 비밀유지 : 각 당사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고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협상의 준거법, 관할권 합의
- 법적 구속력 : 본건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의 현재 투자관련 의도의 표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양해각서에 관련된 내용은 비밀유지의무 조항, 협상의 준거법 등 이외에는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를 구속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MOU sampl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OMPANY**

-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U”) is entered into and mutually understood by and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ompany to support and invest in Project with faith and sincerity.
- Parties:
- Investment:
 1. Region/Area
 2. Size/Scale
 3. Duration/Period
 4. Project Details
-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is obliged to do its utmost to le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nd negotiate in good faith with a view to carrying out Project successfully.
- Responsibilities of Company: Company is obliged to do its utmost to implement investment Project in good faith.
- Pre-Establishment Costs: Unless negligence by Parties is proved, Parties will not be held liable for costs leading up to the actual investment contract.
- Expiration: This MOU shall remain in effect for _ years from the date of conclusion. This MOU may be extended or amended upon written agreement of Parties.
- Confidentiality: Parties will not be allowed to disclose information or materials in regards to Project to any third party, and to use them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purpose of Project.
- Agreement on Governing Law and the Jurisdiction of Negotiations
- Legally Binding Force: This MOU is merely limited to expressing intention of Parties in relation to investment. Hence, except as otherwise prescribed, Parties are only bound by confidentiality obligations, governing law of negotiations, etc.





법무부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Easy Understandable ISD Guide

발행처 법무부 국제법무과

홈페이지 www.moj.go.kr

전화 02-2110-3661

제작 동광문화사 (02-503-5165)

발행일 초판 2010년 2월

2판 2016년 3월

3판 2019년 7월

비매품